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70
------------	------

제출년월일 : 2011. 02.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1. 제안이유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의 급수공사 시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승인”용어를 “신청”으로 변경하고 대형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규정 완화 및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마련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도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와 배치되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변경 (안 제6조)

나. 아파트 등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을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어 이를 세대별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7조1항)

다.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마련 (안 제24조3항)

라. 수도요금 가산금을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료 가산금 수준으로 조정

(안 제34조)

마.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연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체납시 단수조치를 유예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 (안 제43조 제1항 단서 신설)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중 “승인신청”을 “신청”으로 한다.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라 처분 받은 자가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은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 수도사용자등은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 공사를 시행한 후 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공동주택”로 한다.

제24조3항 중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100분의3”을 “100분의2”로 “3/100”을 “2/100”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도 시 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도시과장 주 명 구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상수도운영담당 유 현 열
	담 당 자 성명 · 전화	권 미 애 860-2446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u>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u> 다만, 제47조에 따라 처분 받은 자가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u>승인하지 아니한다.</u> ②.~④. (생략) ⑤ <u>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u> ⑥ (생략) ⑦ 무허가건물(농사용 비닐하우스 주거시설 포함)에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관로공사에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득한 경우 <u>승인신청</u>을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u>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u>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 (생략)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u>신청 하여야 한다.</u> 다만, 제47조에 따라 처분 받은 자가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은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u>신청할 수 없다.</u> ②.~④. (현행과 같음) ⑤ <u>수전분리공사의 경우 수도사용자등은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 공사를 시행한 후 신청 하여야 한다.</u>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u>신청</u> ----- -----.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u>--공동주택, -----</u> ----- ----- ----- ----- ----- -----. ②.~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 <u>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u> <u>감액요금 = 기본요금×4%×중지일수</u>
제34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u>100분의3</u>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u>3/100</u>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34조(연체금 및 독촉) ----- ----- -----<u>100분의2</u>----- ----- -----. 연체금 = 미납요금 × <u>2/100</u>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u><단서신설></u> 1.~13. (생략) ② (생략)	제43조(정수처분) ① ----- ----- -----<u>.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u> 1.~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